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35 발의연월일: 2021. 7. 26.

발 의 자: 정운천・金炳旭・조경태

전봉민 • 구자근 • 황보승희

이채익 · 이종성 · 류성걸

김태호 · 양금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계속되는 대형 화재사고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 수기준 및 시험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을 자체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관리업자가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기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아 보기 어려운 장소에 부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의무화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5조, 제41조 및 제50조 등).

법률 제 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위하여 대통령령으로"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 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 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선발예정인원,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횟수등"을 "횟수와 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의 기록 및 게시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점검일시·점검자 및 점검 결과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40시간 이상의 강습 교육과 8시간 이상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4항 및 제4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 게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최초로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 ① (생 략) 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 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위하여 소방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 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에 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한 시험(이하 이 조에서 "소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 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라 한 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에 합격한 사람 등 대통령령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으로----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 항·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 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 ③ (생 략) ③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신 설> 자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선발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저 등) ①・② (생 략)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 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 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 비, 점검 방법 및 <u>횟수 등</u>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예정인원,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u>경우에는 관계인이 점검일시·</u>
점검자 및 점검 결과 등 점검
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
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
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u>4</u>
<u>횟</u> 수와 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의 기록 및 게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시 등에 관하여-----

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 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 저 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 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 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 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 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 1. ~ 3. (생략)
- ② (생략)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7. (생략)
 -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 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
한 교육) 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40시간
이상의 강습 교육과 8시간 이상
의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1. ~ 7. (현행과 같음)
8.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

검기록표를 작성하지 아니하

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